

의안번호	2209787
의 퇴 인	박상웅 의원
회 답 일	2025. 4. 24.
추 계 번호	25F22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취득에 대한
감면율 인상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79조의2제1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 면)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을 50%에서 75%로 인상하여 적용 - 감면율: (현행) 50% →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75%, (그 외 지역) 50% - 적용기한: 2026.12.31.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79조의2제1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감면)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인상할 경우 취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안 제79조의2제1항)

○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의미(「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조제12호)¹⁾

－ 현재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15호)

[표 1]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구분	지역 수	인구감소지역
부산	3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3개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	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	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	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15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자료: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5호(2024.2.27.)

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국내로 복귀한 해외진출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 취득세 감면 규모 등의 정보가 필요하나 현재로서는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함
- 동 감면규정은 2023.12.29. 신설되어 2024년부터 시행되어 아직까지 동 규정에 따른 감면실적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임
 - 또한 국내로 복귀한 해외진출기업의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부동산의 취득은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현재로서는 해당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부동산의 취득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참고로, 최근 5년(2019~2023년)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실적을 살펴보면 총 97개의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였으며, 이 중 인구감소지역으로 복귀한 기업의 수는 총 14개임
 - －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으로의 복귀사실만으로는 인구감소지역 내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세 감면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움

[표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실적 : 2019~2023년

(단위: 개)

	2019	2020	2021	2022	2023
인구감소지역 ¹⁾	2	2	5	2	3
그 외	8	15	20	21	19
계	10	17	25	23	22

주: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행안부 고시에 해당하는 지역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장설희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설희	02-6788-4836	shjang@assembly.go.kr